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손명수 · 이해식
한민수 · 임미애 · 김주영
권칠승 · 박정현 · 박선원
백승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, 목적 외 사용,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.¹⁾

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·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·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·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

1) '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,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, 총 605건,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('26.7.16, 행정안전부 보도자료)

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·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보조금법”)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,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·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(안 제28조의6 신설)

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·점검·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「지방보조금법」에 규정하고,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·보고·의견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.

나.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(안 제35조제1항 개정)

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상향함.

다.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 요건 강화(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)

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
라.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36조의5제4호 신설)
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“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”를 추가함.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6(부정수급 모니터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, 보고,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, 지방보조

금 반환,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모니터링, 점검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5배”를 “8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”를 “제34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6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6(부정수급 모니터링)</u> ① <u>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</u> 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, 보고,</u>

제35조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

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, 지방보조금 반환,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모니터링, 점검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 ① -----

8배-----

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·삭감 또는 변경·취소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</u> ② ~ ⑤ (생략) 제36조의5(업무의 위탁)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34조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6조의5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</u>
--	---